



LH
집찾기
길라잡이



LH집찾기 길라잡이

2026. 03





LH집찾기 길라잡이

2026. 03



「LH집찾기 길라잡이」는 2026. 3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등으로 이용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개략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개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가이드북 이용 안내	3p
이 가이드북의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2. 메인 내비게이터	4p
나의 상황에 맞는 청약신청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방법	6p
모집공고 확인, 인터넷 청약 신청, 신청 전 체크사항을 안내합니다.	
4. 청년 가구	12p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대상 청약신청을 안내합니다.	
5. 신혼·신생아 가구	40p
신혼·신생아·한부모가족 대상 청약신청을 안내합니다.	
6. 고령자 가구	70p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대상 청약신청을 안내합니다.	
7. 수급자 가구	96p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청약신청을 안내합니다.	
8. 기타 지원계층	120p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대상 청약신청을 안내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34p
가이드북을 보며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합니다.	
10. 문의 및 참고 안내	138p
공식 문의처와 참고 정보를 안내합니다.	



01 가이드북 이용 안내

이 가이드북은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준비 중인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자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목차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 계층과 주택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북 읽는 방법 안내

이 가이드북은 다음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STEP 1

나는 어떤 대상인가요?

→ 메인 내비게이터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계층(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등)을 선택합니다.

STEP 2

나에게 맞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 선택한 계층의 안내 페이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약신청 제도와 주택 유형을 확인합니다.

STEP 3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p6~11)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조회 방법,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4

헛갈리면 어디에 문의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p136~139)과 공식 문의처(p140~145) 확인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자격요건, 임대조건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메인 내비게이터' 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청약신청 정보를 확인하세요 →

02

메인 내비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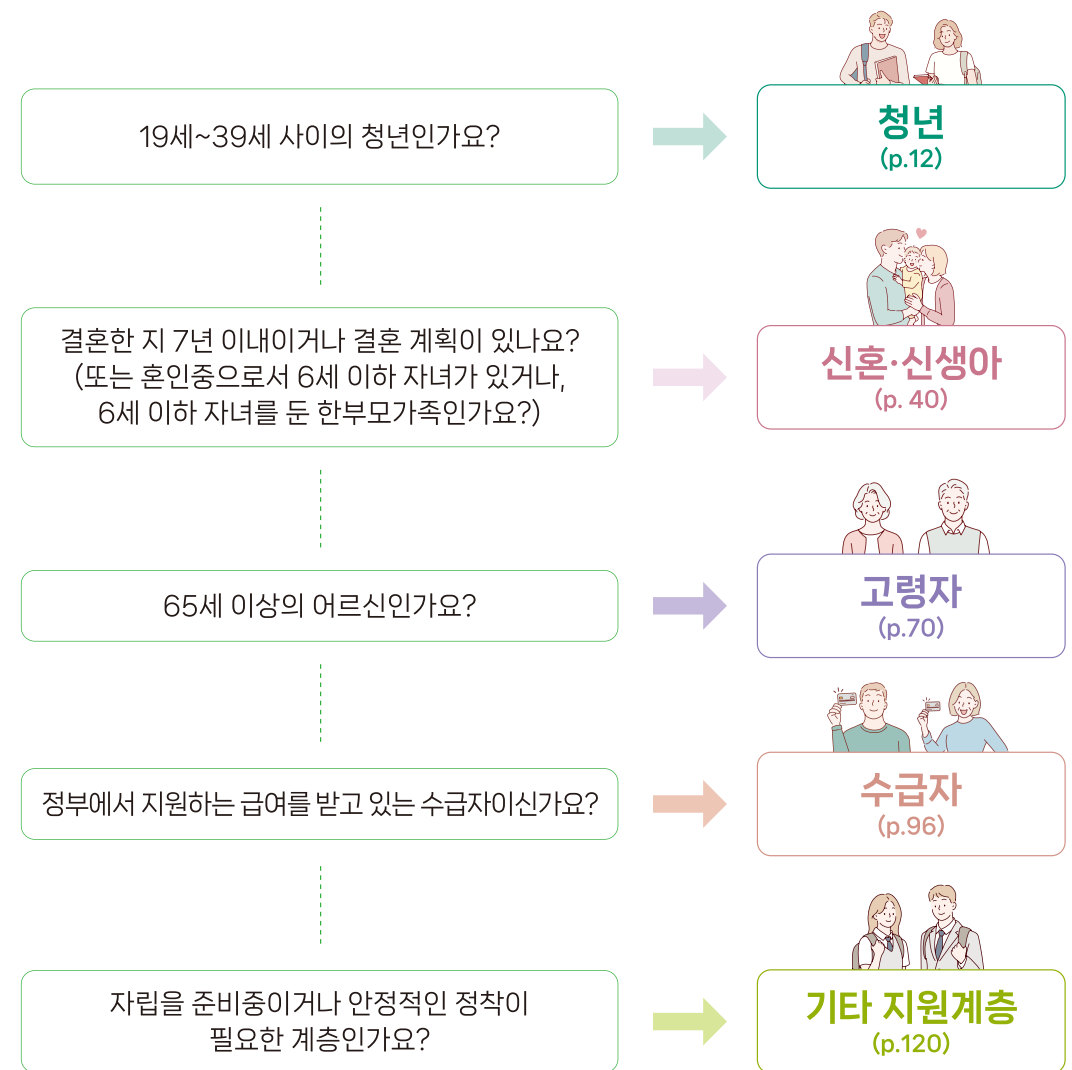


복잡한 건 NO! 나에게 딱 맞는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내가 읽어야 할 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TIP! 여러 상황에 해당한다면, 가장 혜택이 많은 쪽을 먼저 읽어보세요!

0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방법



- [3-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 [3-2] 인터넷 청약 신청 방법
- [3-3] 체크리스트

3-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Q1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LH 청약플러스는 LH에서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식 통합 플랫폼으로, 공고 확인부터 실제 청약 신청, 당첨 조회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개별 입주자 모집공고별로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LH 청약플러스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전국의 모든 LH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주택 찾기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집이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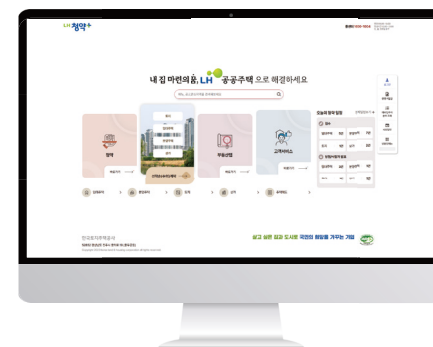
간편한 청약 신청

최초 신청 시에는 서류 제출이 없으나,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현황 조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 여부 조회, 계약 체결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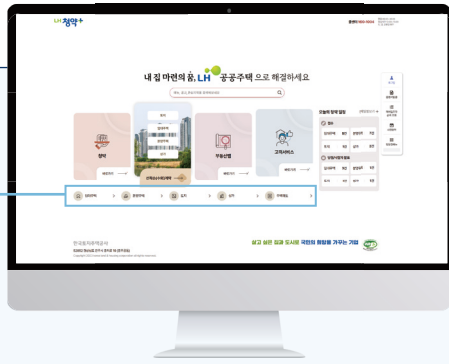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PC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 1 임대주택 > 분양주택 > 토지 > 상가 > 주택매도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전체 25 건 1/1페이지

번호	유형	공고명	지역	첨부	게시일	마감일	상태	조회수
25	가정어린이집	청주시북5단지 가정어린이집 운영예정자 모집 공고[3차]	충청북도	붙임	2026.01.15	2026.02.03	공고중	56
24	매입임대	[인천 남동구] 청년 특화주택 [인천생활]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기숙사형)	인천광역시	붙임	2026.01.14	2026.01.25	접수중	3,778
23	공공임대	익산아영4단지 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붙임	2026.01.14	2026.01.28	공고중	1,745
22	영구임대	[청정공고]정선신동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붙임	2026.01.13	2026.02.06	공고중	1,395
21	영구임대	[청정공고]미디어촌5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붙임	2026.01.13	2026.02.06	공고중	2,199
20	영구임대	정선신동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붙임	2026.01.13	2026.02.06	청정공고중	906
19	영구임대	미디어촌5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붙임	2026.01.13	2026.02.06	청정공고중	1,673
18	매입임대	[경기북부] 2026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하남시)	전국	붙임	2026.01.12	2026.01.28	공고중	9,459

2 공고중 리스트
확인

• 유형: 전체
 • 지역: 전국
 • 상태: 공고중
 • 기간: 게시일
 2025. 11. 15. ~ 2026. 01. 15.

3 주택 유형
맞춤 조회

• 공고문 : 260114_청년특화주택_인천생활입주자_추가모집_공고문(기숙사형).hwp [바로보기](#)
 260114_청년특화주택_인천생활입주자_추가모집_공고문(기숙사형).pdf [바로보기](#)

4 모집 공고
클릭 후
공고문 확인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어플리케이션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2 공고중 리스트
확인

3 주택 유형
맞춤 조회

4 모집 공고
클릭 후
공고문 확인

TIP! 지금 바로 앱을 다운로드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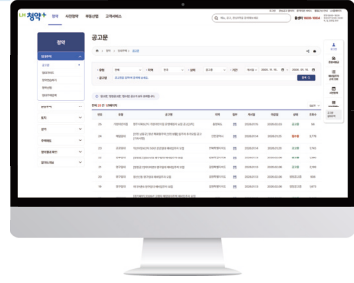


앱스토어 바로가기



구글플레이 바로가기

3-2 인터넷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대행접수일 경우 대행접수자 로그인)

2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3 우선/일반공급, 순위, 공급상세유형 선택

4 청약신청에 관한 필수 확인사항 확인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6 청약신청서 작성

7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8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9 신청서류 제출

10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11 당첨자 발표



3-3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임대주택 청약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 기본 자격 확인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요? * LH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계층에 해당하나요? *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을 확인하고, 모집공고일 이전 입주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기준 확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기준 초과시 신청이 어렵거나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 구성원, 가구 소득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복 신청 여부 확인

한 공고문당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동일 공고문에서 주택 유형, 계층 등을 달리 신청하여도 무효 처리 됩니다.

✓ 모집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했나요? * 청약 신청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공고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신청기간을 놓치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확인했나요? * 신청 주택 유형 및 계층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 일자 확인했나요? * 서류 발급 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위 항목을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계층별 안내를 읽으면 청약 신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신청 전 참고용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이 최종 기준입니다.

04

청년 가구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



- [4-1] 청년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 [4-2] 나에게 맞는 청년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 [4-3] 청년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4-4] 청년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 [4-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4-6] 자주 헛갈리는 질문
- [4-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4-1

청년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학업이나 취업 준비, 사회 진입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LH가 운영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준비에 가장 적합한 주거 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1 청년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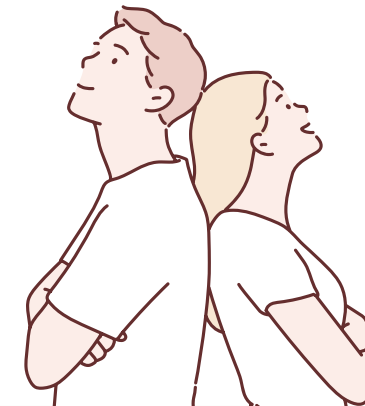
청년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제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가구 청약신청 대상자]

-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 ② 취업준비생 - 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③ 사회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④ 청년 - 위 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Q2 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공급 제도가 운영되나요?

청년 시기에는 자산 형성 기간이 부족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은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 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3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거주 희망 유형에 맞춰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행복주택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경제적 독립 여부나 가구 구성 상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가전제품 등이 미리 갖춰진 경우가 많아, 독립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거주지 이동이 유동적일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멀리서 통학하는 대학생이나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4.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살고 싶은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계약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나 직장 근처 등 특정 동네에 꼭 살아야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하며,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 위 소개된 유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유형과 세부 자격 요건, 공급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4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 소득 및 자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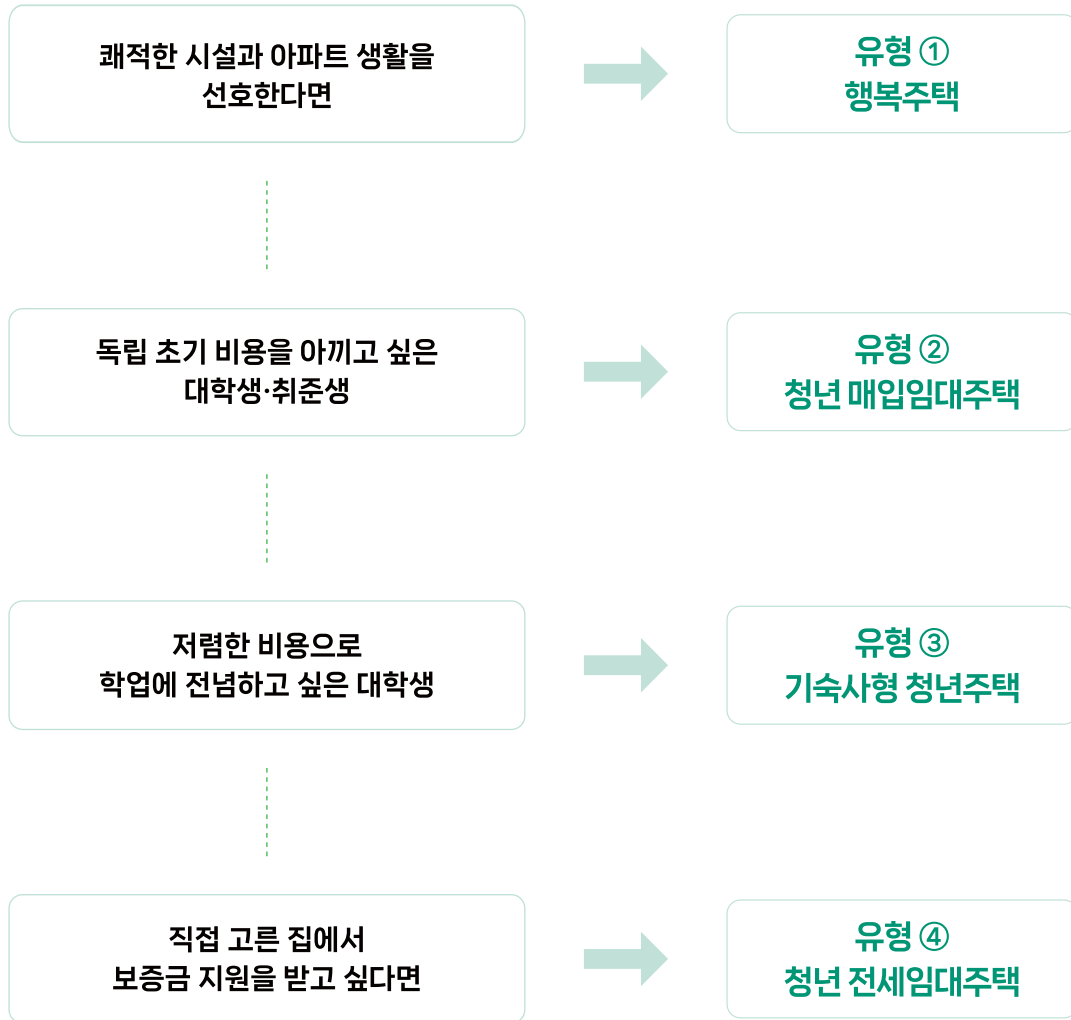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업무 종사 기간과 소득 수준을 조화롭게 검토하여 자립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 후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는 등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거주 기간 연장과 같은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청년 가구 대상의 핵심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p17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4-2 나에게 맞는 청년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 진입 과정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아래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거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4-3 청년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유형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주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입니다.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 공동 세탁실, 무인 택배함 등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주근접과 단지 내 보안 및 편의시설을 중시하는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적합합니다.

입주자격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거주기간** 최대 10년

* 입주 후 혼인 시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최대 2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최대 24년) 거주 가능

유형②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내가 도심 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상대적으로 입주 준비 기간이 짧은 편이며, 가전제품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용적입니다. 독립 초기 가전·가구 구입 비용을 줄이고 싶은 대학생이나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수준(보증금 1~200만원) **거주기간** 최대 10년

*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유형③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기숙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독립된 방을 사용하면서 주방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많으며, 학교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통학 거리와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고 싶은 대학생이나 학교 인근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청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청년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수준(보증금 60만원) **거주기간** 최대 10년

유형④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전세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계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지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정 동네에 거주해야 하거나 본인만의 공간을 직접 선택하고 싶은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3순위) **거주기간** 최대 10년

*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 주택 유형별 공급 방식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4-4

청년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원활한 청약을 위해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내된 프로세스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쁜 학기 중이나 구직 활동 중에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네이버, 토스 등 익숙한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서류를 스캔해서 올릴 필요 없이 본인의 학력 정보나 직장 정보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되므로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접수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LH 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메뉴에서 유형별 실시간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 가구 대상 청약신청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본인의 신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과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역별로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아파트, 빌라, 기숙사형 등)가 다양하므로, 공고문 상단의 '신청 자격'과 '주택 소재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공고명을 직접 검색하거나 유형, 지역, 상태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p8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나에게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2-1 모집공고문에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집일정,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 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25로 가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Q3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행복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 → 입주자격 검증 (소득·자산 등) 및 부적격자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 → 입주자격 검증 → 대상자 선정 안내 → 전세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세 주택 물색 단계에서는 입주자가 희망 지역의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하며, 계약 전에는 반드시 LH의 권리분석 절차를 거쳐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33 Q8 참고)

Q4 신청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신청 접수 후 입주자 선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 검증 절차에 일정한 행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입주는 어렵습니다. 학기 개강이나 직장 발령 시점에 맞춰 집을 구하신다면, 공고문에 적힌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의 이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당첨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신청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청년 가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 포함 여부'입니다. 본인이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청년 유형에 따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신분을 공고문 기준과 정확히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입력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다르면 청약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202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2인	3인	4인
3,813,363원 이하	5,866,270원 이하	8,168,429원 이하	8,802,202원 이하

* 세부 순위 및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70%~120%)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1 부모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청하려는 주택 유형과 순위에 따라 소득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상세 기준을 체크해보세요.

행복주택

- 대학생·취업준비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사회초년생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Q6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 내 '마이페이지(내 청약+)'를 통해 청약 신청 현황, 서류 심사 결과, 당첨 여부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이나 당첨 시 개별 안내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명단"

예비입주자 당첨자 조회 방법

1. LH 청약플러스 2. ARS(1661-7700)

Q7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한 청약 신청 기간 내라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크게 연령,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유형별(행복주택, 매입임대 등)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8-1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 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 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 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Q8-2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사회초년생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Q8-3 청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대학생은 **총자산** 10,8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산 기준 없음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신청 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약 신청 시점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만 입력하지만,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만 인정)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소지 확인 및 가점 산정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과의 관계 확인 및 소득 합산 판정용
- LH 청약플러스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계층별 추가 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 증명서
-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 시 입력한 가점 정보(해당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가 제출한 서류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부24 등을 통해 미리 서류를 확인한 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서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이며,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1 제출서류 발급일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12.1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267호, (주택관리번호) 2025-980144

•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신청 (PC,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온라인)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입주
12.18(목)	12.29(월) 12.31(수)	1.6(화)	1.7(수) 1.9(금)	1.12(월) 3.18(수)	3.19(목)	별도 안내	계약일부 60일 이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성별분리)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 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 시 부적격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유형 선택) 19~39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자(1~3순위) 및 2순위 신청자는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대원에 부모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267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2025.12.18.)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12.19. ~ 2006.12.18. 출생자)인 사람
 -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12.19.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12.19.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3인) 7,626,973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1인) 4,317,797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I-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5.12.1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1순위-3순위)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 서명(아래 참조) * 부모 무주택 배정 신청 또는 부모 관련 서류 제출 시 본인과 부모 서명, 그 외 본인 서명 (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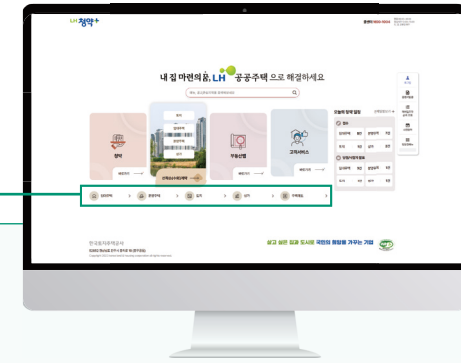
입주자격 확인서류

■ 입주자격 확인서류 (19~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19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청년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첨부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첨부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수료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청약신청서 작성 사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Home > 임대주택 > 분양주택 > 토지 > 상가 > 주택매도 >

2 청약신청 선택

청약신청

1 청약신청

2 청약신청

3 청약신청

4 청약신청

5 청약신청

3 주택유형 선택

주택유형

1 주택유형

2 주택유형

3 주택유형

4 주택유형

5 주택유형

4 공급구분 선택

공급구분

1 공급구분

2 공급구분

3 공급구분

4 공급구분

5 공급구분

5 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신청서 작성 진행도: 1. 청약신청, 2. 청약신청서작성, 3. 세대구성원 정보, 4. 가구원 수, 5. 입주자자격의 순위정보

5-1 순위 선택

입주자자격의 순위정보

입주자자격의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5-2 청약정보 기입

청약신청 정보

주최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 BNK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없음

고객님은 " "에 청약지속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입한 기입자가 있습니까?
 *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등 위 지출통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칙제 처리되오니 반드시 청약홈(http://applyhome.co.kr) 또는 국민은행(http://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있는 업무에 종사 여부

예 아니오

직장명

소재지

5-3 세대구성원 정보 기입

세대구성원 정보

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선택

세대원

5-4 가구원 수 기입

가구원 수

가구원 수 * 태아수

1인 태아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태아수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5-5 신청자 인적사항 기입

신청자 인적사항

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휴대전화번호 * SMS(문자) 수신동의 전화번호

이메일 * 이메일 수신동의

혼인여부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혼인 중인 경우

5-6 서약서 동의

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무주택·소득·자산 검증범위

신청자격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 산정	자산 산정
대학생	• 신청자 본인만	• 신청자 본인 • 부모	• 신청자 본인만
청년	•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필수] 서약서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6 청약신청완료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접수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자: 2025년 02월 11일 (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2025년 02월 12일 ~ 2025년 02월 24일

4-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소중한 당첨 기회를 잃지 않도록 무주택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Q1 입주 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 가구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지역의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입주자격 상세표'**를 본인의 현재 상황(학력, 소득 등)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는 3순위(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지원하거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계층(행복주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Q2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신청 시점은 물론 계약 후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혹시라도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주가 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실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입력한 정보(해당 계층, 거주지 가점 등)와 다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자격을 혼동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공고문에 기재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상 제출 서류 목록을 하나씩 체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5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도 부모님 소득을 보나요?

본인이 세대 분리를 하여 독립 중이더라도, 청년 유형(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따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1 부모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만 심사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로 지원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3순위로 지원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만 심사합니다.

Q6 졸업 예정이거나 곧 취업할 예정인데,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 기준으로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대학생'으로, 졸업은 했지만 2년이 안 되었다면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도중 신분이 바뀌더라도 공고일 당시 기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7 임대료를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네, LH는 청년들의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임대조건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의 매달 소득 수준이나 자금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만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청년 특화형주택은 위 제도가 해당 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민간 전세 주택을 물색해야 하므로, 주택의 권리관계(가격 및 채무 관계 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LH는 입주자가 찾아온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권리분석'을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 물색을 완료하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6

자주 헛갈리는 질문

청년 가구 대상 청약 신청 과정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 자격의 해석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자격·가족 범위

Q1 신청 시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에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 모두를 포함하여 자격을 검증하며, 입양된 경우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만약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실종신고서나 소명서 등)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 자격으로만 심사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시점에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는 3순위(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지원하거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계층(행복주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Q2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유형(대학생 등)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의 배점(가점) 항목 중 '부모 무주택 여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일 경우 가점을 받아 당첨에 유리할 수 있지만, 유주택이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입주자격 자체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니 개별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혼한 경우에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분을 포함하여 검증합니다.

Q4 계약 후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해당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 유형 및 상황에 따라 계약 시점에 1순위 자격(수급자 등)으로 적용되던 임대조건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② 연령·신분·학력 기준

Q5 18세 이하 대학생 또는 40세 이상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유형]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계층은 '19세~39세'라는 연령 조건 혹은 '대학생·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18세 이하라도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 4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졸업 또는 종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라면 해당 자격으로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6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되는 졸업·종퇴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유형]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종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2년의 기산점은 '모집공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6년 1월 1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하거나 종퇴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졸업 예정자나 졸업 유예자도 취업준비생 자격에 포함되어 폭넓게 인정되므로 본인의 학력 변동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7 대학생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등은 주택 유형이나 세부 공고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포함 여부도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해당 공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인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거주 이력 및 중복 신청

Q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 계약자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자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 합니다.

* 특정 유형에서는 중복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지역 제한이 있나요?

청년 가구 대상 청약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타지역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 공고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나 해당 지역 소재 학교/직장인에게 가점(순위)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권과 일치하는 지역에 지원할 때 당첨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Q10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에 있어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각각 독립된 경제 주체로 인정되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명 모두 당첨될 경우 각각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④ 기숙사형 청년 주택

Q11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거주 중인데 다른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 중에도 다른 지역의 공고에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 인근 기숙사형 주택에 살다가 취업으로 인해 직장 근처의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로 옮기고 싶다면 새로 신청하여 당첨된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유동적인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상황 변화에 맞춰 거주지를 유연하게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Q12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성별에 따라 거주 공간이 분리되나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동 또는 층 별로 성별을 분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내용은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있는 일부주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층별 구분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13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졸업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포함)이나 청년(19~39세 이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분은 바뀌어도 청년 청약 신청 자격 범위 안에만 있다면 가장 거주 가능 기간(보통 10년) 내에서는 퇴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⑤ 혼인·군복무·거주 유지

Q14 거주 중 혼인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된 기간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재계약 시점에는 청년 자격이 아닌 '신혼부부' 유형으로 자격을 전환하여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이나 거주 기간이 '신혼부부' 유형 기준에 맞춰 새로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후 혼인 시,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하여 20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하여 20년까지 거주 가능

Q15 군 입대나 대학 소재지 변경으로 퇴거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거하게 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재입주 특례' 등의 제도를 통해 나중에 복귀했을 때 거주 기간을 합산해 주거나 우선적인 재입주 기회를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나가는 것보다 퇴거 전에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군 입대로 인한 퇴거임을 명확히 하고, '재입주 가능 여부'를 관리 주체와 미리 상담해 두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16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만큼, 입주 일정과 임대주택 퇴거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모집공고의 내용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매우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궁금증이 있다면 LH가 운영하는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받아보세요.

Q1 신청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약된 정보보다는 반드시 해당 회차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모집공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고문 속 용어가 생소하거나 본인의 상황(가구원 분리, 소득 합산 등)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면 아래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상담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전국 각지에 위치한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주거복지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138 마이홈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분야와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LH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조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마이홈 콜센터의 전화상담, 문자, 관심지구알리미 설정, A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집공고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문의처와 상담 방법은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05

신혼·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신생아·한부모]



- [5-1]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 [5-2] 나에게 맞는 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 [5-3] 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5-4] 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 [5-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5-6] 자주 헛갈리는 질문
- [5-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5-1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LH가 운영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과 미래 준비에 가장 적합한 주거 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1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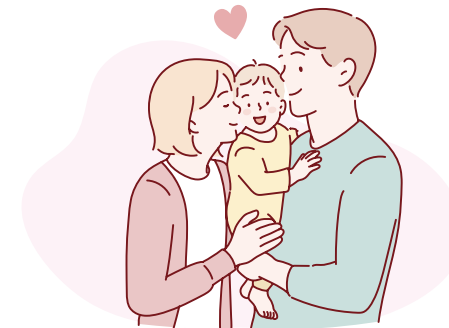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LH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여 양질의 주택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가구 청약신청 대상자]

- ①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 ②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④ 신생아 가구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가구

Q2 왜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공급제도가 운영되나요?

결혼 초기와 출산 시기에는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신혼부부 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3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생활 환경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최적의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행복주택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을 적용하므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 해야합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상이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조건·공급기준 등을 일원화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입주자의 소득, 가구원 수, 출산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등으로 소득 기준을 가산하므로 합리적인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접근성이 우수한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신혼·신생아Ⅰ : 시중시세 30~40%, 신혼·신생아Ⅱ : 시중시세 70~80%의 준전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가구에 유리합니다.

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선택하고 LH가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희망 지역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거주 지역과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이 매우 높아, 본인의 생활권에 맞춰 유연하게 주거를 마련하고 싶은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위 소개된 유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유형과 세부 자격 요건, 공급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4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주거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안정적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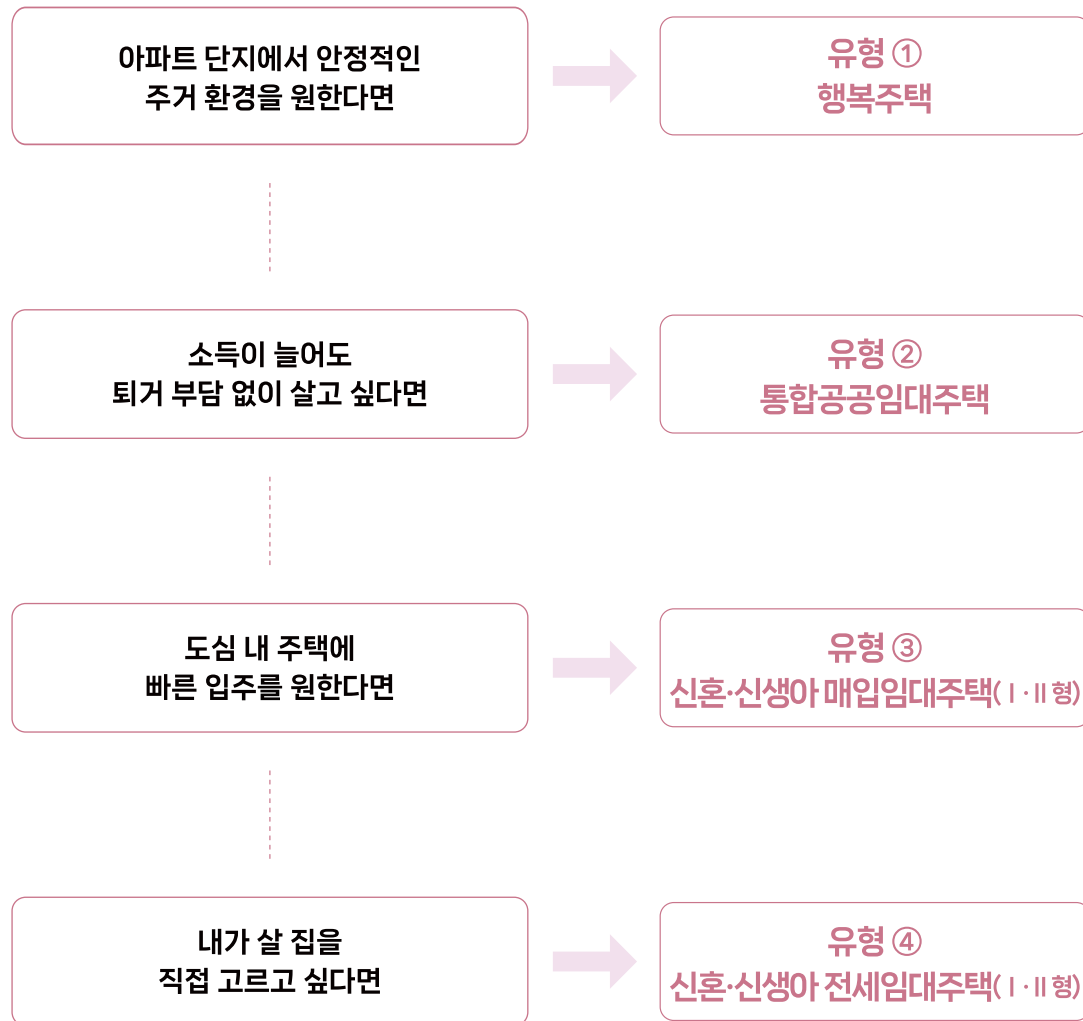
특히 **신생아 가구의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또는 가점 혜택을 부여하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우대를 적용합니다.

또한, 입주 후 자녀가 태어나는 등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길 경우**,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세부사항은 p45~46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5-2 나에게 맞는 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신혼부부 계층의 생애 주기와 자산 형성 과정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아래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5-3 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유형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주로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지원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거주기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유형②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기존의 복잡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시중 시세 대비 35~90%)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일반형의 경우 30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맞벌이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퇴거 부담을 줄이면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거주기간** 최대 30년

유형③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LH가 도심 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 대비 30~40%(Ⅰ형), 70~80%(Ⅱ형-전세형) 수준의 임대료로 기존 도심 생활권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은 가구에 적합합니다. Ⅰ형은 최대 20년, Ⅱ형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 **임대조건** (Ⅰ형) 시중 시세 30~40% / (Ⅱ형) 시중 시세 70~80%의 준전세(임대조건 80%가 보증금)

거주기간 (Ⅰ형) 최대 20년 / (Ⅱ형)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유형④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신혼 초 보증금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낮은 이자만 부담하며 Ⅰ형은 최대 20년, Ⅱ형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Ⅰ형)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Ⅰ·Ⅱ형 공통)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내 해당액

거주기간 (Ⅰ형) 최대 20년 / (Ⅱ형)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 주택 유형별 공급 방식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4

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원활한 청약을 위해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내된 프로세스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로 바쁜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외에도 네이버·토스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 가구원 정보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완료되지만,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접수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LH 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메뉴에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국 실시간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 가점이나 우선공급 물량 등 가구별 특화된 조건이 담겨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에 해당되는 모집공고 전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 공고명을 직접 검색하거나 유형, 지역, 상태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 p8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나에게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2-1 모집공고문에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집일정,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 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53로 가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Q3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 → 입주자격 검증 (소득·자산 등) 및 부적격자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 → 입주자격 검증 → 대상자 선정 안내 → 전세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세 주택 물색 단계에서는 입주자가 희망 지역의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하며, 계약 전에는 반드시 LH의 권리분석 절차를 거쳐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63 Q7참고)

Q4 신청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신청 접수 후 입주자 선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검증 절차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입주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경쟁이 치열한 경우 당첨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신청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공고문에서 정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 가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향후 제출할 증빙 서류와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입력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2인	3인	4인
3,813,363원 이하	5,866,270원 이하	8,168,429원 이하	8,802,202원 이하

* 세부 순위 및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70%~120%)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대비 100%	2,564,238원 이하	4,199,292원 이하	5,359,036원 이하	6,494,738원 이하
중위소득 대비 150%	3,846,357원 이하	6,298,938원 이하	8,038,554원 이하	9,742,107원 이하

Q6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 내 '마이페이지(내 청약+)'를 통해 청약 신청 현황, 서류 심사 결과, 당첨 여부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이나 당첨 시 개별 안내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명단"

예비입주자 당첨자 조회 방법

1. LH 청약플러스 2. ARS(1661-7700)

Q7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한 청약 신청 기간 내라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 자녀의 연령,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본인의 해당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8-1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
신생아 가구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Q8-2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세대원수, 출산자녀수에 따라 최대 20%p까지 우대되며, 일반형은 신혼부부 맞벌이에 대해 30%p 우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형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 90% 이하)

II 형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 형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 90% 이하)

II 형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Q8-3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형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II 형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 형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II 형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신청 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약 신청 시점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만 입력하지만,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소지 확인 및 가점 산정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자녀 관계 확인용

LH 청약플러스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계층별 추가 서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의 기본증명서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LH 양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LH 양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해당자 :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신청 시 입력한 가점 정보(혼인 기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가 제출한 서류와 다를 경우 당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부24 등을 통해 미리 서류를 확인한 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서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이며,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1 제출서류 발급일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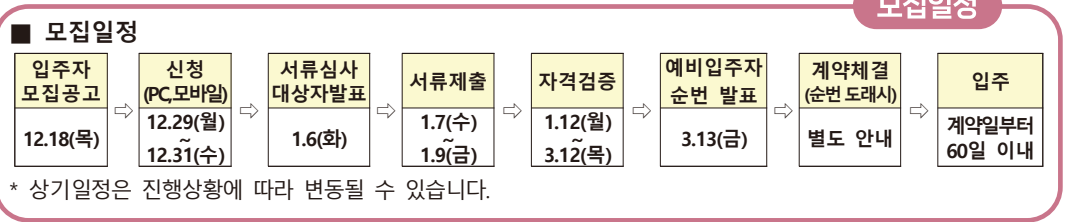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경기북부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하남시]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2번→3번)]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12.1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 I 공고"와 "신혼·신생아 II(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 II(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 I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118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공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오피스텔은 관리 특성상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높고 기계식주차장 운영에 따라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2025.12.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12.19. ~ 2025.12.18.)인 사람
-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8.12.1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12.1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3.12.1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입주순위

■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4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238,348원	4,381,602원	5,338,881원	6,004,662원	6,321,734원	6,813,160원
90%	3,957,980원	5,477,003원	6,864,276원	7,720,279원	8,127,943원	8,759,777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기준)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37,000,000원 이하	371,000,000원 이하	405,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0,000원 이하	50,200,000원 이하	54,76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4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25.12.18.)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1.6.(화)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기간 : 2026.1.7.(수) ~ 2026.1.9.(금)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수신처 :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1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담당자” 앞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6.1.9.)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키(열쇠)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생아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자녀 명의로 발급이 되는 서류는 자녀 명의 서류제출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신생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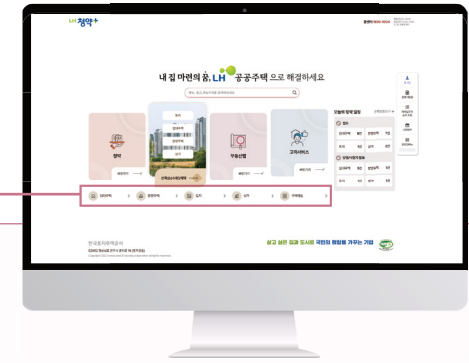
기타 제출서류

■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가구 외에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 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12.18. ※ 발급 관리번호 : 2025980143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행, 청약홈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청약신청서 작성 사례

'N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2 청약신청 선택

3 주택유형 선택

4 공급구분 선택

5 청약서 작성

5-1 순위 선택
입주자격을 위한 순위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2 청약정보 기입
청약신청 정보 입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청약신청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가구원 수 기입.

5-3 세대구성원 정보 기입
세대구성원 정보 입력.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정보 입력.

5-4 가구원 수 기입
가구원 수 기입. 세대원 수와 태아 수를 입력합니다.

5-5 신청자 인적사항 기입

신청자 인적사항

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휴대전화번호 * SMS(문자) 수신동의 전화번호

이메일 * 이메일 수신동의

혼인여부 *

5-6 서약서 동의

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 산정	자산 산정
대학생	• 신청자 본인만	• 신청자 본인 • 부모	• 신청자 본인만
청년	•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필수] 서약서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6 청약신청완료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신청일(신청일)**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센터에서 접수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자: 2025년 02월 11일 (신청-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2025년 02월 12일 ~ 2025년 02월 24일

5-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소중한 당첨 기회를 잃지 않도록 무주택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Q1 입주 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7년 이내), 자녀 유무, 가구 구성원 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류 검증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Q2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신청 시점은 물론 계약 후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혹시라도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주가 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실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입력한 정보(해당 계층, 거주지 가점 등)와 다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가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녀 수 오류, 무주택 기간 계산 착오 등은 순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입력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맞벌이로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발급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5 신혼·신생아가구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에서는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새로운 공고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첨 후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서 반드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I 형과 II 형을 중복 신청하면 II 형 신청만 인정되며, I 형 신청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Q6 신청 후 가구 상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이후 입주 전까지 혼인 상태의 변화, 세대구성원의 변동, 혹은 소득 및 자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상태의 변화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수 있고, 가구원 수의 변화로 향후 갱신 계약 시 소득 기준 적용 범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므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LH 상담센터를 통해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7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민간 전세 주택을 물색해야 하므로, 주택의 권리관계(가격 및 채무 관계 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LH는 입주자가 찾아온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권리분석'을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 물색을 완료하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8 소득이나 자산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신청자격,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5-6

자주 헛갈리는 질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청약 신청 과정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 자격의 해석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혼인·신분 기준

Q1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혼인 신고 전이라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 시점에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혼인신고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혼인 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혼인신고일부터 역산하여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세대원에 있는 경우(태아를 포함) 신혼부부 자격이 인정됩니다.** 재혼 가구 역시 이전의 혼인 기록과는 무관하게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나, 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되는 날(만 7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됩니다.

Q3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전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령 기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구성원)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와 동일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배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공고문의 '한부모가족' 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생아 가구 및 자녀 기준

Q4 신생아 가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세 미만의 자녀(출산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이 되거나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의 연령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Q5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신생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네, **임신 중인 태아 역시 자녀 수에 포함되어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실제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6 아이를 더 낳게 되면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 중 자녀 수가 늘어나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해진 경우, 해당 단지 더 넓은 면적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하거나 다른 단지의 신혼부부 전형에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될수록 지원 혜택이 커지므로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소득 및 자격 기준

Q7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임대주택

행복주택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0%p를 더 가산한 120%가 적용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30%p를 더 가산한 130%~180%가 적용됩니다.

2. 매입·전세임대주택

신혼·신생아 I 형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20%p를 더 가산한 90%가 적용됩니다.

신혼·신생아 II 형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70%p를 더 가산한 200%가 적용됩니다.

Q8 육아휴직 중인 경우, 맞벌이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직장 재직 상태'라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소득 산정은 휴직 직전의 정상적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소득 세부 내역을 바탕으로 합니다. 휴직 기간 중 무급 처리가 되었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맞벌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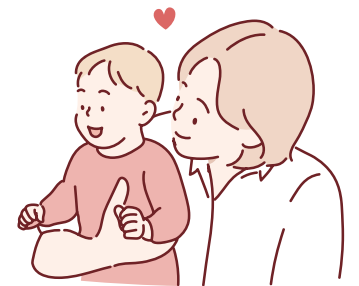
Q9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분리세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거주를 달리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필요

Q10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여 입주 전까지 세대 분리를 하거나, 공고일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마쳐 본인이 별도의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 시점에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혼인신고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거주 이력·지역 기준

Q11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신혼부부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입주'가 원칙이므로 **중복 수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공고에 당첨되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은 반드시 명도(퇴거)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에서는 중복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1 신혼부부매입임대 I 거주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신혼부부 등의 신청 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매입임대 I 계약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혼·신생아매입임대 I 주택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Q11-2 신혼·신생아매입임대 II 와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신생아 I 과 신혼·신생아 II 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신생아 II 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 I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Q12 지역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주지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주택 소재지 및 연접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며, 타 지역 거주자는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거주지가 해당 공고의 우선순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13 부모님 댁 근처 주택 신청 시, 부모님의 거주 기간이 우선순위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모님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 하셨더라도 신청자가 타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모집공고의 내용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매우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궁금증이 있다면 LH가 운영하는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받아보세요.

Q1 신청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약된 정보보다는 반드시 해당 회차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모집공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고문 속 용어가 생소하거나 본인의 상황(가구원 분리, 소득 합산 등)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면 아래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상담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전국 각지에 위치한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주거복지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138 마이홈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분야와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LH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조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마이홈 콜센터의 전화상담, 문자, 관심지구알리미 설정, A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집공고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문의처와 상담 방법은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06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 [6-1] 고령자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 [6-2] 나에게 맞는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 [6-3]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6-4]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 [6-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6-6] 자주 헛갈리는 질문
- [6-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6-1

고령자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고령자 가구의 편안한 노후와 그들을 모시는 부양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LH가 운영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가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 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1 고령자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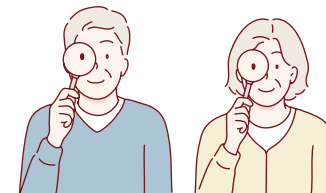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 가구와 그 부양가족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자 가구 청약신청 대상자]

- ① 고령자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Q2 왜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공급제도가 운영되나요?

고령층은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부양가족에게는 부모님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에 따르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령자 본인에게는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Q3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방식, 그리고 부양가족과의 거주지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건설되며,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2. 행복주택

LH가 직접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공급과 더불어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고령자에 배정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희망하는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3.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별(영구·행복)로 상이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조건·공급기준 등을 일원화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도 제공됩니다.

4.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 병원 이용이나 도심 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 위 소개된 유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유형과 세부 자격 요건, 공급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4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청약신청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상황(소득·자산)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우선 공급 및 가점 제도를 통해 당첨 문턱을 낮추어 드리며,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이 모두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p74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6-2 나에게 맞는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와 부양가족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아래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거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6-3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유형①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은 다른 주택 유형보다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가장 저렴하게 공급되는 유형이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거주기간** 최대 50년

유형②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주로 역세권이나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고령자 가구(65세 이상)를 위한 전용 물량이 별도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거주기간** 최대 20년

유형③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기존의 복잡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도 제공됩니다. 소득 구간 및 가구원 수에 맞춰 합리적인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거주기간** 최대 30년

유형④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심 내 신축 빌라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병원, 약국, 시장 등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며, 시중 시세의 40% 임대료로 입주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거주기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주택 유형별 공급 방식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4 고령자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온라인 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과 바쁜 자녀분들을 위해, 고령자 가구 대상 청약 신청의 핵심 경로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LH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지원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1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네이버·토스 등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Q2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LH 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메뉴에서 고령자 가구를 위한 전국 실시간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65세 이상 연령 기준, 거주 기간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용 주거약자 특화 설계나 가점 기준 등 고령자 가구에 특화된 조건이 담겨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에 해당되는 모집공고 전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공고명을 직접 검색하거나 유형, 지역, 상태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p8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나에게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2-1 모집공고문에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집일정,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 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80로 가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Q3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 → 입주자격 검증 (소득·자산 등) 및 부적격자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지자체) → (예비)입주자 선정(지자체 → LH) → 계약 안내(LH) → 계약 체결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Q4 신청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신청 접수 후 입주자 선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검증 절차에 일정한 행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입주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령자 전용 주택의 공급가능 호수, 또는 인기가 높은 단지의 경우 당첨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신청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공고문에서 정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가점 항목인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65세 이상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향후 제출할 증빙 서류와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입력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2인	3인	4인
3,813,363원 이하	5,866,270원 이하	8,168,429원 이하	8,802,202원 이하

* 세부 순위 및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70%~120%)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대비 100%	2,564,238원 이하	4,199,292원 이하	5,359,036원 이하	6,494,738원 이하
중위소득 대비 150%	3,846,357원 이하	6,298,938원 이하	8,038,554원 이하	9,742,107원 이하

Q6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자녀분들은 LH 청약플러스 내 '마이페이지(내 청약+)'를 통해 청약 신청 현황과 심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LH는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이나 당첨 시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 문자(SMS)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공고에 따라 서류 접수나 계약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LH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여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상담원에게 직접 당첨 여부나 다음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명단"

예비입주자 당첨자 조회 방법

1. LH 청약플러스 2. ARS(1661-7700)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을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의 접수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한 청약 신청 기간 내라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크게 연령,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유형별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거주 및 무장애 시설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Q8-1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Q8-2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 등

3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행복주택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고령자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Q8-3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별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신청 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약 신청 시점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만 입력하지만,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연령 및 부양 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양가족 및 세대원 구성 확인용

LH 청약플러스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계층별 추가 서류

고령자 : 65세 이상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신청 시 입력한 연령 및 부양가족 수 등의 가점 정보가 실제 서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등을 꼼꼼히 대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위 서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이며,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1 제출서류 발급일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주아라(엘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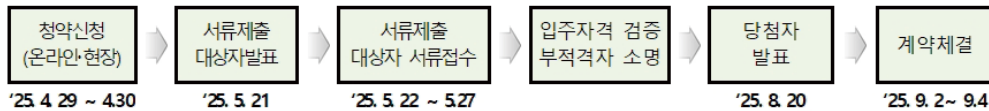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⑦ 이 주택은 제주 아라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별도의 동을 증축한 것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 ⑧ 이 주택은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어형 주택(6인 1실, 거실 등 공동사용)으로, 평면도를 참고하여 개별·공용공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⑨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모집공고일 '24.12.05)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4.16(수)으로,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이하 증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1960.04.16 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모집일정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1.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6135, LH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내 증축동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24호)	세대별 계약면적(m ²)					금회 공급 세대수	해당동	입주 예정월 (당첨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28(여)	8	28.92	11.2999	6.3059	-	46.5258	111동 (증축동)	'25.12월	
28-1(남)	8	28.92	11.2999	6.3059	-	46.5258			
29A(여)	2	29.56	11.5500	6.4454	-	47.5554			
29A-1(남)	2	29.56	11.5500	6.4454	-	47.5554			
29B(여)	2	29.56	11.5500	6.4454	-	47.5554			
29B-1(남)	2	29.56	11.5500	6.4454	-	47.5554			

* 공급형별 괄호안에 여·남은 성별구분 공급에 따른 여성, 남성 공급을 의미합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5.09.02(화) ~ 09.04(목), 10:00시~16:00]

- 계약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100, LH제주지역본부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공동 거주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은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어형 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공용공간 사용 및 공동생활에 있어 입주자간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갈등이나 싸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주택 내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입주자간 분쟁 일체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공용공간(공용거실 및 주방 등)에 대한 관리비가 부과되며, 공용공간은 입주자 공동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거주인원 또는 점용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등 관리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대상 및 조건

신청자격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6.) 현재 **만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 신청자격(1~3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td> <td rowspan="5">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배우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td> </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입주순위

구분	순위	내용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자산 기준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2.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518,715	3,238,348	
	2인가구	3,286,202	4,381,602	
	3인가구	3,813,487	5,338,881	
	4인가구	4,289,044	6,004,662	
	5인가구	4,515,524	6,321,734	
6인가구	4,866,543	6,813,160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3,7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신청서류

7.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5.04.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급신청서	• 신청자 작성(현장접수 장소에 비치예정)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합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필수 제출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해당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아래 '신청자격 증명서' 참고)	각1통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국가보훈처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8.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서류 제출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04.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 청약신청 철회 불가
-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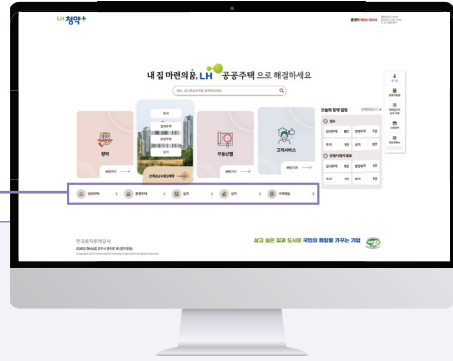
① 온라인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 : 2025. 05.22(목) 10:00 ~ 05.27(화) 17:00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25. 05.22(목) ~ 05.27(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사-13시 제외/ 주말(토일) 제외 • 장소 :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1층 마이홈
③ 등기우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일반우편 불가)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5.05.2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송주소 :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팀 제주우아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제주우아 고령자주택 서류제출' 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신청자는 청약신청접수 시 서류제출을 완료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갈음합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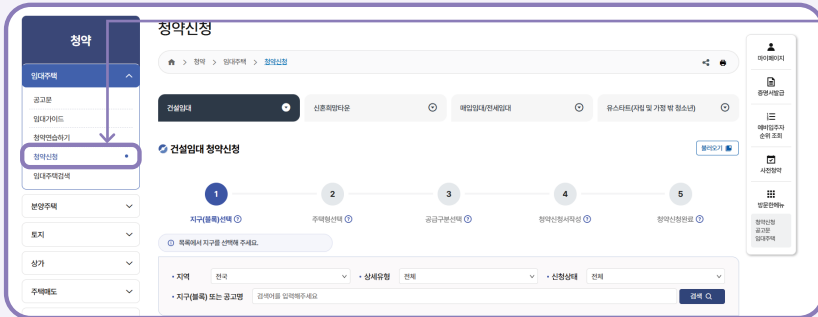
'N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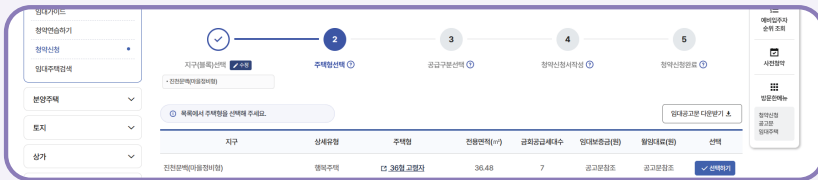
1/3

1 임대주택 > 분양주택 > 토지 > 상가 > 주택매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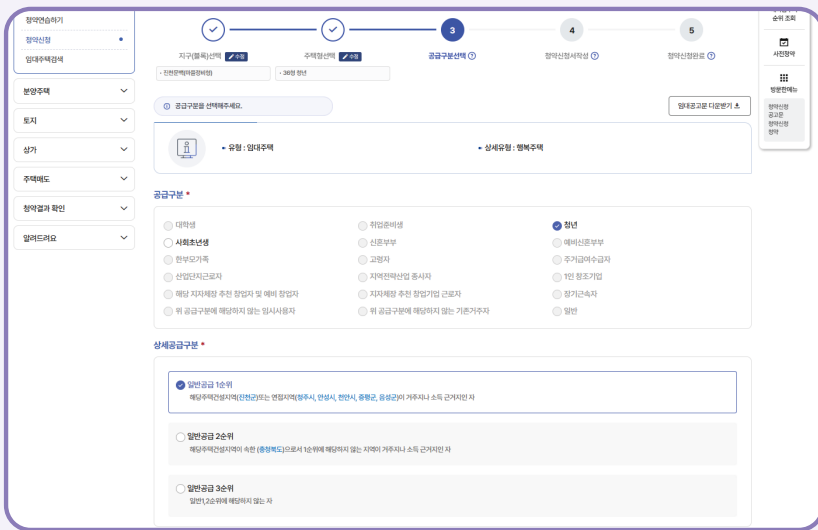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2 청약신청 선택



3 주택유형 선택



4 공급구분 선택

2/3

5 신청서 작성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 임대카이드
- 청약연습하기
- 청약신청
- 임대주택검색
- 분양주택
- 토지
- 상가
- 주택매도
- 청약결과 확인
- 알려드리고요

청약신청

홈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청내역

1. 청약신청 완료

2. 주택임대 선택 완료

3. 공급구분 선택 완료

4. 청약신청서작성

5. 청약신청완료

※ 표시는 필수사항입니다

• 자구(불복) : 진원택(마음정비팀) • 주택형 : 36평 장년

• 공급구분 : 행복주택 (장년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원화 순위정보

입주자격원화 순위

• 우수 상인의 입주자격원화 순위안내 버튼을 눌러 순위별 소득 및 기간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청약신청 정보

순위별 해당지역 최근접입일

▶ 최근접입일 입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input type="radio"/> NH농협은행	<input type="radio"/> KB국민은행	<input type="radio"/> NH농협은행	<input type="radio"/> 우리은행	<input type="radio"/> 하나은행
<input type="radio"/> 신한은행	<input type="radio"/> BNK 부산은행	<input type="radio"/> iM뱅크	<input type="radio"/> BNK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없음

• 고객은 " " 에 청약지속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기입자가 있습니까?

※ 청약보증 또는 청약예금 등 뒤 지속통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채적 처리되오니 반드시 청약홈(http://applyhome.co.kr) 또는 국민은행(http://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여부

예 아니오

직장명

소재지

▶ 소재지입력

세대구성원 정보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구성원은 "동일세대"를, 동거되어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분리세대"를 체크해주세요.

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선택

세대원

▶ 추가 + ▶ 삭제 -

가구원 수

•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가구원 수 *

1인 ▶ 세대수 입력

▶ 입선 중인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세대수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5-1 순위 선택

5-2 청약정보 기입

5-3 세대구성원 정보 기입

5-4 가구원 수 기입

5-5 신청자 인적사항 기입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성명 변경 관련 안내

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SMS(문자) 수신동의 전화번호 - -

이메일 @ 직입력 이메일 수신동의

혼인여부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혼인 중인 경우

5-6 서약서 동의

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무주택·소득·자산 검증범위

신청자격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 산정	자산 산정
대학생	• 신청자 본인만	• 신청자 본인 • 부모	• 신청자 본인만
정년	•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필수] 서약서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6 청약신청완료

청약신청 단계: 청약신청, 청약신청서 접수, 청약신청서 접수, 청약신청서 접수, 청약신청서 접수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신청내역**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접수율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지 발표일자: 2026년 02월 11일 (신청> 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지 명단에서 확인)
-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2026년 02월 12일 ~ 2026년 02월 24일

6-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고령자 가구는 연령 기준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이 세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소중한 당첨 기회를 잃지 않도록 무주택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Q1 입주 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가구 구성원 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류 검증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Q2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신청 시점은 물론 계약 후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혹시라도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주가 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실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입력한 정보(해당 계층, 거주지 가점 등)와 다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 기재 착오는 순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력하신 정보가 실제 증빙 서류와 단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이 되지 않으면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서류 발급 시점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발급 기준일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Q5 고령자 가구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에서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어르신이 새로운 공고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첨 후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서 반드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Q6 소득이나 자산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신청자격,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6-6

자주 헛갈리는 질문

고령자 및 노부모 부양 가구 대상 청약 신청 과정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 자격의 해석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연령·가구 기준

Q1 고령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생년월일이 공고일 이전이면서 65세가 되는 분(공고일 당일 생일자 포함)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령은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이 65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해당 연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신청자가 되어 접수하셔야 합니다.

Q3 모집 공고일 당일에 65세가 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나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당일 생일에 해당하여 65세가 되는 경우에도 고령자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없는 배우자(65세 미만)의 자산도 확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은 모두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가구 구성·동거 형태

Q5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구성원 수에 포함되나요?

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세대구성원 수에 포함됩니다.

Q7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분리세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거주를 달리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필요

③ 주택 등 입주자격 기준

Q8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여부는 과거의 소유 이력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을 처분하여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등)도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9 주택소유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면적이나 공시가액 등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의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의 세부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자동차 가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 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 p78 Q8-3 자동차 가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등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④ 지역·공급 방식

Q11 지역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주지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주택 소재지 및 연접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며, 타 지역 거주자는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거주지가 해당 공고의 우선순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고령자 매입임대의 경우 해당 공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12 나중에 자녀가 있는 지역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거주 중 다른 지역의 LH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새로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이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입주 원칙이므로, 새로운 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에 살던 주택은 반드시 명도(퇴거) 절차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에서는 중복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령자복지주택 등 특이사항

Q13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떤 분들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나요?

고령자복지주택은 일반 고령자 중에서도 청약신청이 더욱 시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저소득층)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일반 고령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Q1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나요?

유형별로 거주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은 최장 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장 30년,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Q15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후 건강이 좋아지면 퇴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입주 당시 고령자 및 주거약자 자격을 갖추어 입주하셨다면, 이후 **건강 상태 변화와 관계없이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등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6-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모집공고의 내용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매우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궁금증이 있다면 LH가 운영하는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받아보세요.

Q1 신청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약된 정보보다는 반드시 해당 회차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모집공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고문 속 용어가 생소하거나 본인의 상황(가구원 분리, 소득 합산 등)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면 아래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상담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전국 각지에 위치한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주거복지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

영구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의 상세한 신청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138 마이홈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분야와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LH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조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마이홈 콜센터의 전화상담, 문자, 관심지구알리미 설정, A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집공고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문의처와 상담 방법은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07

수급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7-1] 수급자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 [7-2] 나에게 맞는 수급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 [7-3] 수급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7-4] 수급자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 [7-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7-6] 자주 헛갈리는 질문
- [7-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7-1

수급자 가구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와 LH가 지원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수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Q1 수급자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LH가 지원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제공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임대료 지원), 수선급여(집수리)** 등 수급자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포함합니다.

Q2 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공급제도가 운영되나요?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근로 능력이 부족한 수급자는 민간 주택의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보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3 수급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크게 '임대주택 공급' 과 '주거급여(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로 구분됩니다.

임대주택 공급

시중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사회적 보호가 가장 시급한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매입임대주택

접근성이 우수한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익숙한 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에 유리합니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전세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계약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위 소개된 유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유형과 세부 자격 요건, 공급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대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자가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급여'가 있습니다.

1. 주거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2. 수선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Q4 수급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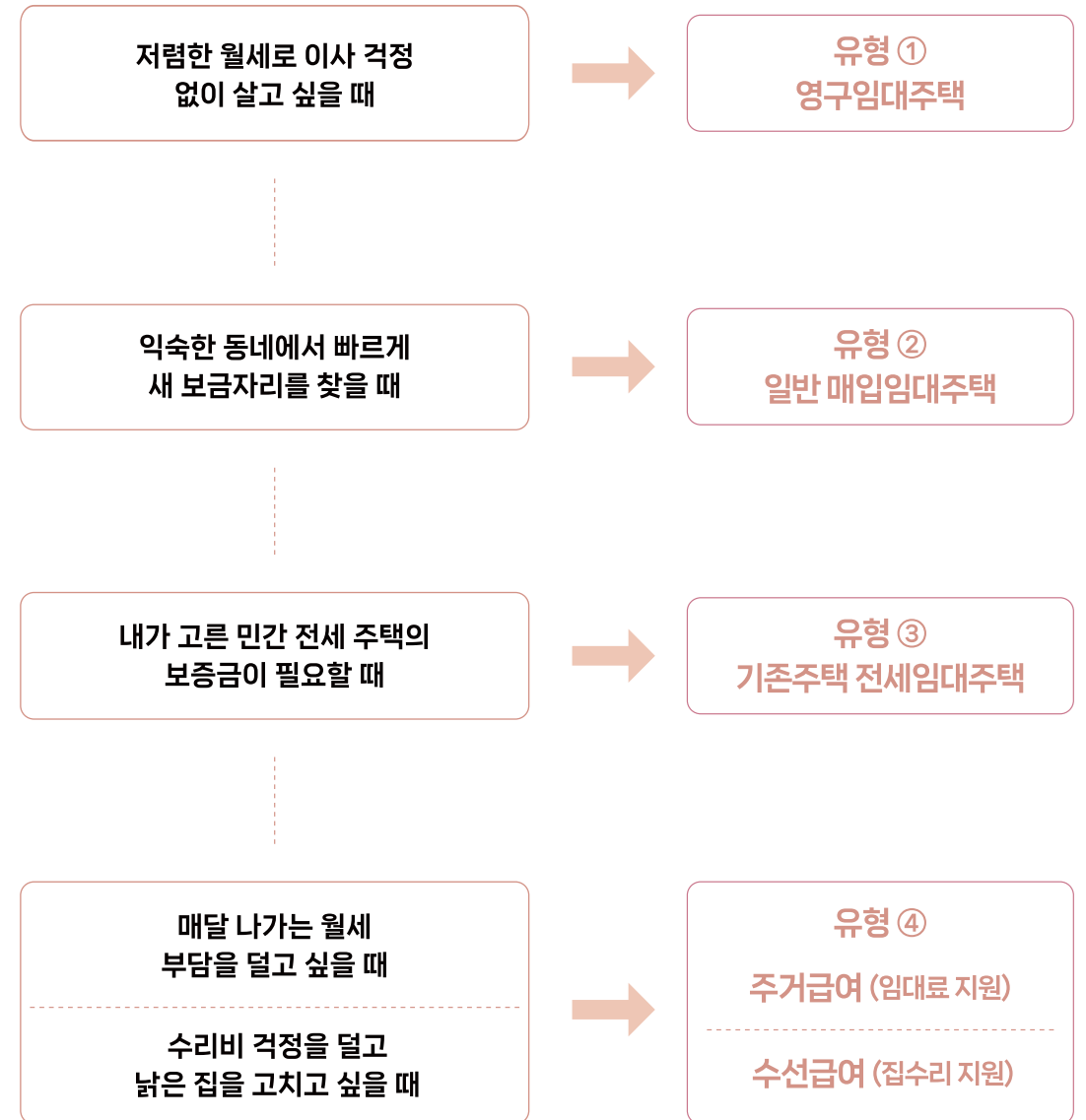
사회적 보호가 시급한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통한 임대료 지원**이나 **수선급여를 통한 낡은 자가 주택의 수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p100~101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7-2

나에게 맞는 수급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 찾기

수급자 가구에 임대주택 공급부터 주거급여 지원까지 종합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아래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거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7-3 수급자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유형①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주변 시세의 30% 수준인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복지사가 상주하며 식사 지원, 안부 확인 등 밀착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 거주기간** 최대 50년

유형② 일반 매입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내가 살던 동네의 익숙한 시장, 병원, 이웃을 떠나지 않고 빠르게 입주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 입주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 거주기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유형③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원하는 동네의 전세 주택을 구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 입주자격**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내 해당액
- 거주기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유형④ 주거급여 | 수선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지원인가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선급여는 어떤 지원인가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범위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중위소득 48%

[2026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 주택 유형별 공급 방식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7-4

수급자 가구 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원활한 청약을 위해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내된 프로세스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수급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 및 제도 유형에 따라 신청 창구가 두 곳으로 나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LH 지역본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본인의 수급 유형(생계, 의료, 주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주택형과 임대료 조건이 상세히 담겨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수급 자격과 모집공고 전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TIP** - 공고명을 직접 검색하거나 유형, 지역, 상태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 p8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나에게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2-1 모집공고문에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집일정,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 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107로 가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Q3 수급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수급자 → 지자체)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 → 수급자) → 계약안내(LH → 예비입주자)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지자체) → (예비)입주자 선정(지자체 → LH)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입주 신청(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검색(지자체) → 입주자 선정 통보(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수선급여

급여신청(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재산 등 조사(지자체)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지자체) → 급여지급(지자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세 주택 물색 단계에서는 입주자가 희망 지역의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하며, 계약 전에는 반드시 LH의 권리분석 절차를 거쳐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115 Q6 참고)

Q4 신청 후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신청 즉시 입주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행정 기간이 필요하여 입주 일정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신청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요건과 수급 자격의 유지**입니다. 신청 시점부터 실제 입주하는 날까지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같은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	2인	3인	4인
3,813,363원 이하	5,866,270원 이하	8,168,429원 이하	8,802,202원 이하

* 세부 순위 및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70%~120%)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Q6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 내 '마이페이지(내 청약+)'를 통해 청약 신청 현황, 서류 심사 결과, 당첨 여부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이나 당첨 시 개별 안내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명단"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한 청약 신청 기간 내라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임대료 할인 혜택이나 주거비 현금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Q8-1 수급자 가구 대상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유형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3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임대료 지원) · 수선급여(집수리 지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Q9 신청 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약 신청 시점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만 입력하지만,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만 인정)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 구성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무주택 및 부양가족 확인

LH 청약플러스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자격 증명 서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주거급여 결정 통지서

수급자 자격 증명서는 복지포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 입력한 수급 유형이 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서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이며,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1 제출서류 발급일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3 ㉓ 관련]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1.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4,500호
대상주택	<p>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p> <p>※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p> <p>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p>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p>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p> <p>※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p>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 ※ 우대금리 적용
 -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2%)
 -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6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6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2% ÷ 12] = 226,410원(임대보증금 5%)
= [(13,000만원 - 260만원) × 2.2% ÷ 12] = 233,560원(임대보증금 2%)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2% ÷ 12] = 137,95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2% ÷ 12] = 142,35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2% ÷ 12] = 133,83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2% ÷ 12] = 138,23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2세 이하의 자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
 2. 그 외의 경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5.07.14(월) ~ 2025.07.21(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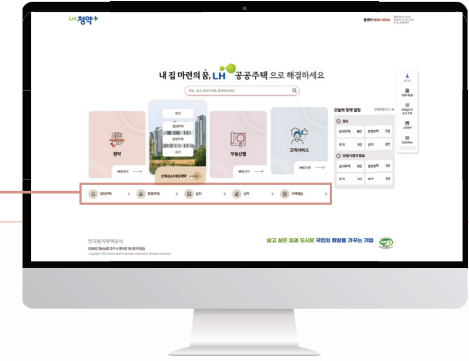
기본 제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필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1통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1통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1통

청약신청서 작성 사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Home > 임대주택 > 분양주택 > 토지 > 상가 > 주택제도 >

2 청약신청 선택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접수 > 청약신청서 심사 > 청약신청서 통보 > 청약신청서 확정

1 청약신청

1. 청약신청서 작성 > 2. 청약신청서 접수 > 3. 청약신청서 심사 > 4. 청약신청서 통보 > 5. 청약신청서 확정

3 주택유형 선택

1. 청약신청서 작성 > 2. 청약신청서 접수 > 3. 청약신청서 심사 > 4. 청약신청서 통보 > 5. 청약신청서 확정

2. 청약신청서 접수

1. 청약신청서 접수 > 2. 청약신청서 심사 > 3. 청약신청서 통보 > 4. 청약신청서 확정

4 공급구분 선택

1. 청약신청서 작성 > 2. 청약신청서 접수 > 3. 청약신청서 심사 > 4. 청약신청서 통보 > 5. 청약신청서 확정

3. 청약신청서 심사

1. 청약신청서 접수 > 2. 청약신청서 심사 > 3. 청약신청서 통보 > 4. 청약신청서 확정

공급구분

- 대위성
- 사회초년생
- 한부모가족
- 산림도시근로자
- 해당 지자체장 추천 대상자 및 예비 창업자
- 취업공약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사원
- 취업유형성
- 신혼부부
- 고령자
- 지역연계산업 동시자
- 지자체장 추천 창업기업 근로자
- 취업공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근로자
- 청년
- 예비신혼부부
- 주거급여수급자
- 연인 필요가족
- 장기근로자
- 일반

상세공급구분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일반공급 3순위

5 청약서 작성

청약신청

1. 청약신청 단계: 1. 청약신청, 2. 청약신청서작성, 3. 청약신청서작성, 4. 청약신청서작성, 5. 청약신청서작성

5-1 순위 선택

입주자격을 가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5-2 청약정보 기입

주거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 BNK경남은행

5-3 세대구성원 정보 기입

세대구성원 정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추가, 삭제

5-4 가구원 수 기입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태아수: 태아수 입력

5-5 신청자 인적사항 기입

신청자 인적사항

1.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SMS(문자) 수신동의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여부

5-6 서약서 동의

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 산정	자산 산정
대학생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 본인, 부모	신청자 본인만
청년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부에 등재되어 있는)	

[필수] 서약서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6 청약신청완료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접수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자: 2025년 02월 11일 (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2025년 02월 12일 ~ 2025년 02월 24일

7-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수급자 가구 청약 신청은 일반 신청자보다 혜택이 큰 만큼, 자격 검증과 유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입주 후 수급 자격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핵심 주의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Q1 입주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급자 가구의 입주자격은 해당 공고문 모집공고일 시점에 본인이 해당 급여(생계·의료·주거·수선) 수급자로서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Q2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신청 시점은 물론 계약 후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혹시라도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주가 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기재 오류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수급 유형(예: 주거급여 전용 전형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신청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표와 다르게 입력할 경우 서류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 되니 제출 전 입력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이 되지 않으면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수급자 가구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에서는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새로운 공고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첨 후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서 반드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Q6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임대는 본인이 직접 전세 주택을 찾아야 하므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자 가구는 전체 보증금 중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0~20% 정도만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LH가 진행하는 '권리분석' 결과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 높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면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안내를 받은 후 정해진 물색 기간(공고마다 상이) 내에 주택을 찾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Q7 소득이나 자산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신청자격,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7-6

자주 헛갈리는 질문

수급자 가구 대상 청약 신청 과정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 자격의 해석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급자·자격 기준

Q1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급여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나 임대료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수급 자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모든 자격 판정의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모집 공고일 이전에 수급 자격을 취득 완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증명서 발급이 바로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 이후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수급자 전형으로 신청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공고문 상단의 날짜와 본인의 수급자격 취득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3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여부는 과거의 소유 이력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을 처분하여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등)도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가구 구성·세대 형태

Q4 가구 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 전원을 봅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이때 세대구성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Q5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③ 유형별 특이사항

Q6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인데 자녀가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Q7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을 누가 진행하나요?

계약은 입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집주인과 직접 체결**합니다. 입주자는 살고 싶은 전세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계약 요청을 하고, **LH가 전세지원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입주자는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임대보증금만 내면 되며,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만 매달 LH에 월임대료로 내면 됩니다.



7-7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모집공고의 내용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매우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궁금증이 있다면 LH가 운영하는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받아보세요.

Q1 신청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약된 정보보다는 반드시 해당 회차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모집공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고문 속 용어가 생소하거나 본인의 상황(가구원 분리, 소득 합산 등)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면 아래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상담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전국 각지에 위치한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주거복지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

영구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의 상세한 신청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콜센터 : 1600-0777



p138 마이홈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상담 분야와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LH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조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마이홈 콜센터의 전화상담, 문자, 관심지구알리미 설정, A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집공고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문의처와 상담 방법은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08

기타 지원계층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사할린동포·북한이탈주민]



- [8-1] 기타 지원계층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 [8-2] 나에게 맞는 기타 지원계층 임대주택 유형 찾기
- [8-3] 기타 지원계층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8-4] 기타 지원계층 임대주택 신청 방법
- [8-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8-6]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8-1

기타 지원계층에게 알맞은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가 운영하는 맞춤형 청약신청 제도의 취지와 주요 공급 방식을 안내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거 모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Q1 기타 지원계층 대상 주거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자립을 준비하거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LH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을 시중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별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왜 기타 지원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공급제도가 운영되나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착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이나 정착 초기 단계인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에게는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LH에서는 해당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 안정망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Q3 기타 지원계층 대상 임대주택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각 대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신속한 입주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은 LH의 지원 프로그램인 '유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주택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 후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동포에게는 각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p124~125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기타 지원계층 대상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사회적 보호가 가장 시급한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가능계층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가능계층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3. 행복주택

직주근접이 용이한 입지에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약신청 가능계층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4. 매입임대주택

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면 시중시세의 40%수준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가능계층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5. 전세임대주택

원하는 주택을 신청자가 물색하면 내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유형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면 22세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가능계층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 위 소개된 유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유형과 세부 자격 요건, 공급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8-2 나에게 맞는 기타 지원계층 임대주택 유형 찾기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래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거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정착하고 싶다면



유형 ①
영구임대주택

안정적인 자립 기반 위에서 내일의 꿈을 키우고 싶다면



유형 ②
국민임대주택

도심 속 역세권에서 당당한 홀로서기를 준비한다면



유형 ③
행복주택

※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만 지원 가능

도심 내 주택에 빠른 입주를 원한다면



유형 ④
매입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만 지원 가능

내가 살 집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유형 ⑤
전세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만 지원 가능

※ 본인의 가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거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8-3

기타 지원계층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기타 지원계층을 위한 각 임대주택 유형의 상세 특징을 안내합니다.

유형①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자립 초기 단계에서도 큰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정착 지원 안내를 연결받을 수 있으며,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북한이탈주민·사할린동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거주기간 최장 50년

*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청소년은 임대보증금을 1백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약 체결

유형②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길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교육이나 취업 등 장기적인 자립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게 훌륭한 주거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입주자격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북한이탈주민·사할린동포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거주기간 최장 30년

*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청소년은 임대보증금을 1백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약 체결

유형③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도심 속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돕는 주택입니다. 주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해 세련된 공간으로 마련되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 ~ 80수준

거주기간 최장 10년

*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청소년은 임대보증금을 1백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약 체결

유형④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단독·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년매입임대(자립준비청년)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자립준비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중시세 40%(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장 5회 재계약(최장 20년)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수준

거주기간 최장 20년

유형⑤ 전세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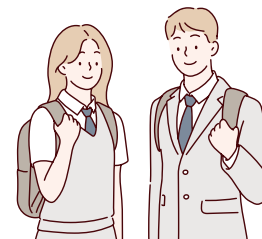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인가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년전세임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1백만원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22세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 지 5년(군복무기간 제외)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며, 최대 6년 거주 가능하지만 유형 변경 후,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청년 - 1백만원 / 소년·소녀 가정 - 무상지원

거주기간 청년 - 최장 10년, 소년·소녀 가정 - 최장 6년(유형 변경 후,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 주택 유형별 공급 방식과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8-4

기타 지원계층 임대주택 신청 방법

기타 지원계층 청약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직접 신청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한 접수 방식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자립과 정착을 위한 첫 단추인 신청 절차와 단계별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Q1 기타 지원계층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청소년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유스타트'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유관기관인 '통일부' 및 '하나원'의 추천을 통해,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재외동포청' 및 '대한적십자사'의 선정절차를 거쳐 신청가능합니다.

Q2 기타 지원계층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 가능주택 있는 경우 :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인터넷) → 임대차 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급 가능주택 없는 경우 :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인터넷) → 예비입주자 등록 → 공급 가능 주택 확보 → 임대차 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인터넷) → 자격확인(LH) → 대상자 선정 → 전세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능주택 있는 경우 :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현장 방문) → 주택 및 기금 조회 → 임대차 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급 가능주택 없는 경우 :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접수(현장 방문) → 주택 및 기금 조회 → 예비입주자 등록 → 공급 가능 주택 확보 → 임대차 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세 주택 물색 단계에서는 입주자가 희망 지역의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하며, 계약 전에는 반드시 권리분석 절차를 거쳐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타 지원계층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보호조치연장,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등록된 동포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재외동포청의 지원요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일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Q4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신청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무주택 및 부양가족 확인
- LH 청약플러스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계층별 증빙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정부24발급, 행정복지센터, 보호기관 방문발급)
-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1388포털 발급, 기관 방문발급), 공공임대주택 추천서(기관방문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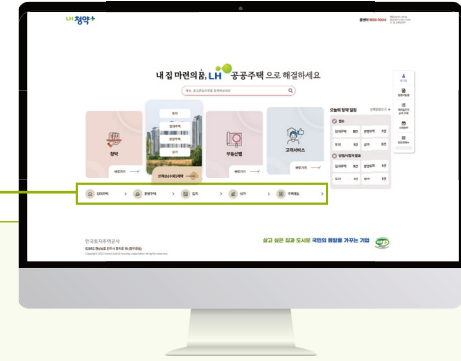
Q5 제출서류 발급일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공급이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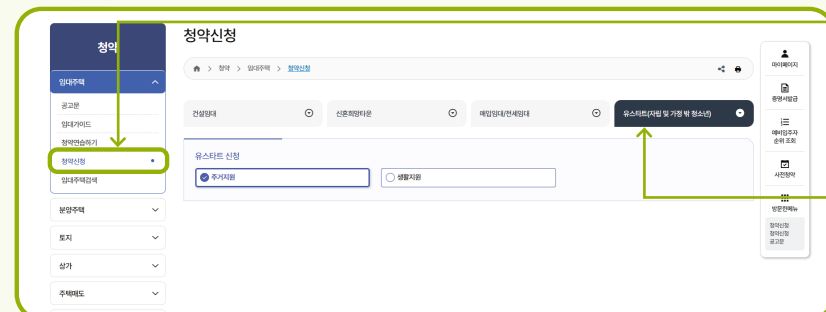


유스타트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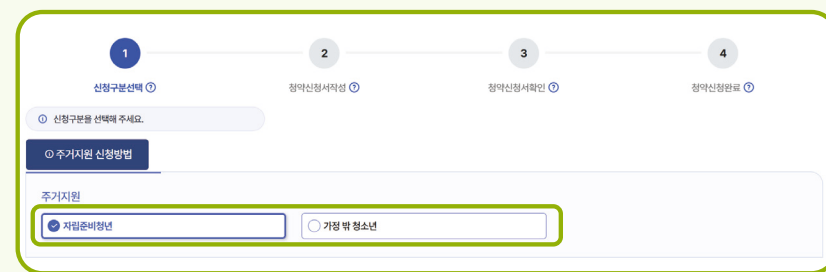


1 메뉴에서 임대주택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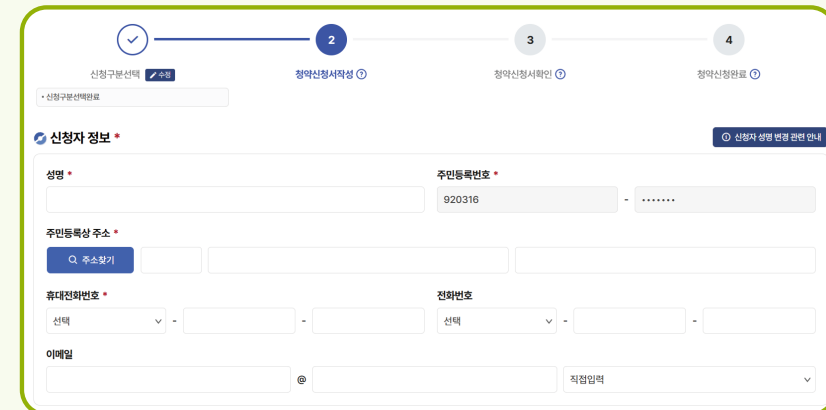


2 청약신청 선택

3 유스타트 선택



4 신청구분 선택



5 신청자 정보 입력

6 임대유형 선택

임대유형 선택 *

임대유형별 안내사항 확인 및 임대유형 선택

임대유형별 안내사항

임대유형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아래 건설임대 안내사항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임대 안내사항 다운로드

선택하신 임대유형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확인

7 임대신청 지역 선택

임대신청 지역 *

1순위 *

2순위

3순위

1순위 지역 선택

지역 선택

지역 선택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확인

8 참고사항 입력

참고사항

○ 담당자가 배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을 입력해주시요. (희망단지 등)

9 필수서류 업로드

신청자 필수서류 업로드

○ (3MB이내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주민등록등본 *

파일 선택 파일선택

개인정보동의서 *

파일 선택 파일선택

↓ 다운로드(전송)

증빙서류(자립준비청년 / 가정 밖 청소년)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가정밖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공공임대주택 추천서

파일 선택 파일선택

가족관계증명서(상제)

파일 선택 파일선택

10 청약신청서 확인

주거지원 청약신청

신청구분선택 완료 작성완료 **3** 청약신청서확인 4 청약신청완료

○ 표시는 필수사항입니다.

신청자 정보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임대유형 및 신청지역

유스타트 유형 *	자립준비청년
임대유형 *	건설임대
1순위 *	서울특별시(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순위 *	경기도(성남, 광주(경기))
3순위 *	인천광역시(계양구, 서구, 강화)

11 청약신청서 제출

청약신청서 내용수정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구분선택 완료 작성완료 청약신청서확인 **4** 청약신청완료

신청자 정보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은 □ "유스타트 지원 진행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접수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증 인쇄하기

* 사할린 동포, 북한이탈주민 신청 : 각 지원기관 통해서 신청 후 개별 주택 공급 및 계약 진행

8-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자립과 정착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타 지원계층 가구에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Q1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약 체결일은 물론, **실제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은 무주택자) 만약 중간에 본인이나 가구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게 되면 재계약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류 누락은 심사 제외 또는 탈락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LH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경미한 누락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소명 요청(보완 기간)'**을 드립니다. 이 안내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LH의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은 주택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는 입주지원금 등 생활지원 프로그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신청경로]

LH 청약플러스 > 로그인 > 청약(임대주택) > 유스타트 (자립 및 가정 밖 청소년) > 청약신청 > 청약신청

* 신청자 정보 입력 > 임대유형 및 지역 선택 > 서류업로드 > 청약신청서 제출 및 추가인증 > 접수완료

Q4 북한이탈주민 및 사할린동포는 주택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지원기관인 통일부 및 하나원, 사할린동포는 관련 지원기관인 재외동포청 및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은 각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모집공고의 내용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매우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궁금증이 있다면 LH가 운영하는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받아보세요.

Q1 모집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 상담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은 전용 상담창구인 유스타트 콜센터(1670-2288)를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북을 보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공통)

Q1 이 가이드북만 보고 신청해도 되나요?

이 가이드북은 청약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실제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임대료, 제출 서류, 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광고 내용이 최종 기준입니다.

Q2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계층과 지역을 선택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이드북을 통해 나에게 맞는 계층과 임대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입주자 모집공고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LH 고객센터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여러 임대주택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 시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5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소득·자산 기준은 임대주택 유형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세대 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 구성 기준은 신청 유형과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 혼인 여부, 부양 관계 등은 모집공고에 안내된 기준을 따릅니다.

Q7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모집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모집 일정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부 청약신청은 온라인 신청 외에 방문 신청 또는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Q9 지역이 다르면 조건도 달라지나요?

임대주택은 공급 지역과 모집 시기에 따라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어떤 계층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이드북의 메인 내비게이터(p5)를 통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계층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계층 안내를 참고하세요. 그래도 어려운 경우 LH 고객센터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FAQ는 청약신청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이 최종 기준입니다.

10

문의 및 참고 안내

[공식 문의처와 참고 정보를 안내합니다.]



[10-1] 마이홈 안내

[10-2] 지역 마이홈센터 안내

10-1 마이홈 안내



마이홈은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원스톱 통합 안내 서비스입니다.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지역별 상담센터
전국 63개소



마이홈 포털
myhome.go.kr



직접상담으로
정확하게!



전화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알차게!



모바일로
빠르게!

상담분야

주거
지원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상담

금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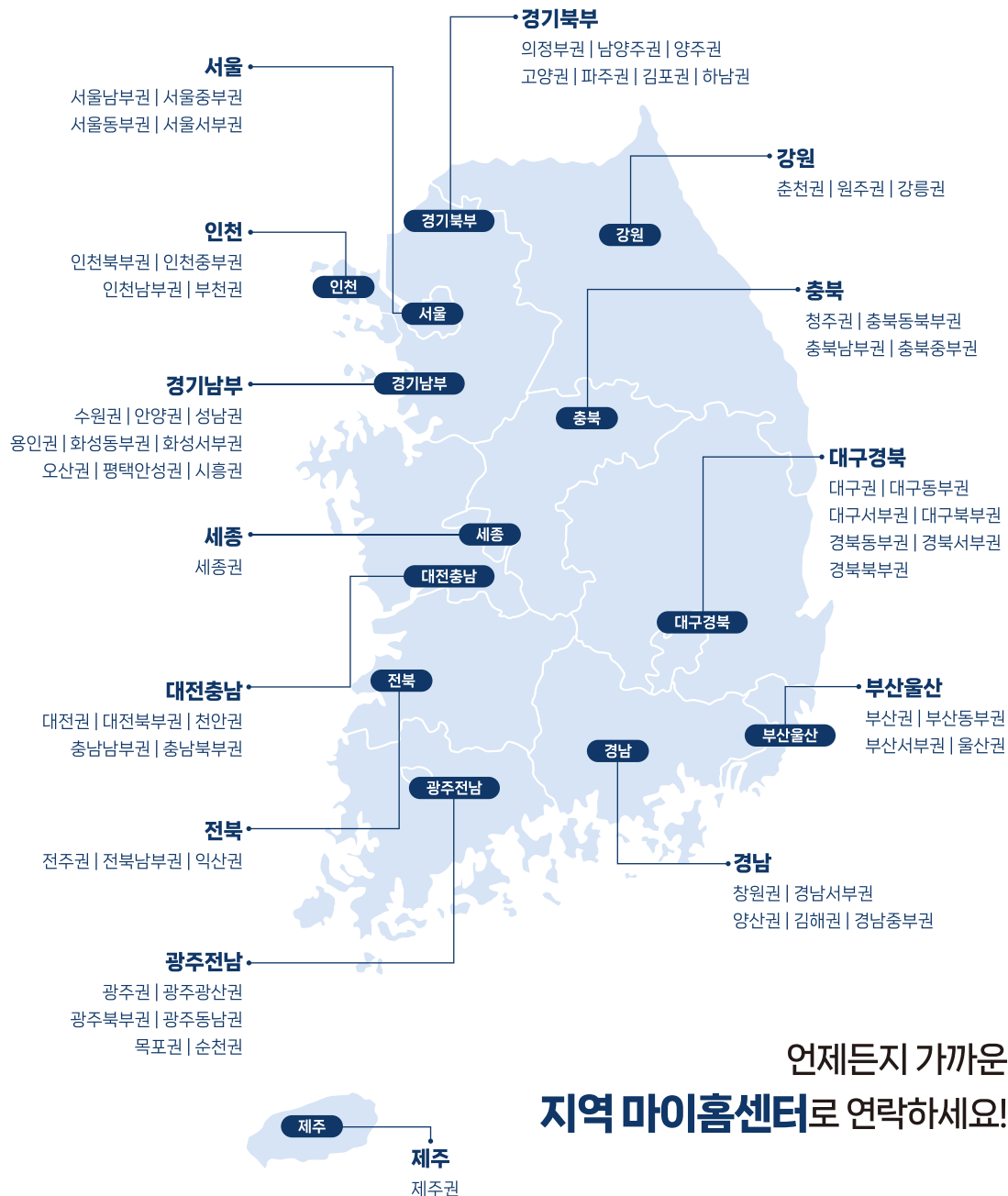
주택자금 대출상담,
은행신청 연계

법률
지원

임대차 분쟁, 개인회생 등
법률상담

10-2

지역 마이홈센터 안내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 마이홈센터로 연락하세요!



지역 마이홈센터는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안내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본부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141) 성원타워 1층	02-2182-2787
	서울중부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10층	02-6454-2770
	서울동부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구의동 252-16) 웰스타워 2층 210~21호	02-6077-9590
	서울서부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 1층	02-2169-8801
인천	인천북부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032-717-8503
	인천중부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032-717-8501
	인천남부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춘공원으로 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210
	부천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중동 1058-5) 동화빌딩 6층	032-450-8251
경기남부	수원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이의동 1329) 광고 안효빌딩 11층	031-546-2116
	안양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관양동 1591-10) 2층	031-467-5723
	성남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서현동 251-1) 아베스밸리 11층	031-778-3103
	용인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중동 842) 주네브 스타월드 9층	031-280-4711
	화성동부권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반송동 92-7) 스타플라자 4층	031-5180-8716
	화성서부권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병점동 886-5) 병점메트로타워 6층	031-231-0600
	오산권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수청동 619-7) 수청프라자 2층	031-8092-5800
	평택안성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서정동) 아트타워 2층	031-8094-5023
시흥권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75) 경인성빌딩 3층	031-362-7723	
경기북부	의정부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9층	031-822-4011
	남양주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다산동 6062) 신희메디컬타워 4층	031-590-6612
	양주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031-822-5501
	고양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마두동 1010)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031-927-3039
	파주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야당동1041) 월드타워 8차 6층	031-934-5637
	김포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장기동 1603) 하나센터티 11층	031-8048-5304
	하남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망월동1140) 모노라운지상가 1층	031-622-2700

지역본부	센터명	주소	연락처
부산울산	부산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1199-1)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051-460-6814
	부산동부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84-18) BN(BIP) 빌딩 3층	051-460-6900
	부산서부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범천동877-2) 사학연금회관 3층	051-460-6824
	울산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220, 대상웰라움 1층	052-932-4801
강원	춘천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LH 강원지역본부 1층	033-258-4166
	원주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반곡동 1880-10) 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 3층	033-812-6754
	강릉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846(옥천동 145) SHE타워 2층	033-610-5178
충북	청주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성화동 936) LH충북지역본부 5층	043-901-4512
	충북동북부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초종리 310-1) 농협홍삼 관리동 3층	043-820-9135
	충북남부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청주수곡행복주택 2층	043-913-1828
	충북중부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73(KT울량빌딩) 4층	043-925-3900
대전충남	대전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1380)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042-470-0813
	대전북부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봉명동 448-9), 더그린2차 1층	042-349-0823
	천안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회망로 32(장재리 1719) 2층	041-538-5822
	충남남부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412-13)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2
충남북부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신관동 599-1) 주월빌딩 3층	041-854-8341	
전북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58(효자동2가 1333-1) LH전북지역본부2층	063-230-6356
	전북남부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56(연지동 49-22) 금오빌딩 4층	063-570-2311
	익산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063-840-0912
광주전남	광주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062-360-3128
	광주광산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599-1) 행복주택상가 3층	062-441-2916
	광주북부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월계동 869-2) 행복주택상가 2층	062-410-1950
	광주동남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062-411-4101
	목포권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164) 남교트윈스타 2층	061-983-3300
	순천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석현동 87) KT 북순천지사 3층	061-900-4333

지역본부	센터명	주소	연락처
대구경북	대구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053-603-2346
	대구동부권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신서동 621-1) 명진빌딩 4층	053-960-3621~3
	대구서부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천내리 158-2) 5층	053-610-9921
	대구북부권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614-4) 1층	053-210-8301~3
	경북동부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상도동 18-263) 무진빌딩 3층	054-280-4751~3
	경북서부권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송정동 58) 용은빌딩 1층	054-450-3800
경북북부권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옥동 791-1) 한양빌딩 3층	054-851-9940	
경남	창원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LH 경남지역본부 2층	055-210-8405
	경남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가좌동 700-1) MBC 경남진주사옥 4층	055-922-1501
	양산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범어리 2714-3)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2층	055-362-7282
	김해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1164) 2층	055-907-8100~3
	경남중부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빌딩 7층	055-600-2100
세종	세종권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20(다정동 965) 가온마을7단지 상가 1층	044-902-2330
제주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1동 305-4) LH 제주지역본부 1층	064-720-1091



